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27 선고 2022가단588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3. 6. 15.

판결 선고2023. 7.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0.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2. 4. 21. 접수 제300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7. 21. 주식회사 D로부터 4,000,000원을, 같은날 E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2. 6. 20. 기준 다음과 같다.

(주) D	3,984,721	4,643,841	8,628,562	27.9%
E (주)	4,973,265	6,412,397	11,385,662	27.9%
	8,957,986	11,056,238	20,014,224	

다. C의 부친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0.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G, H, C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다.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21. 10. 19.경 피고, G, H과의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4.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각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앞서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성한 아들인 C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상속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

별지